

제주지방법원 2023. 1. 19 선고 2020가단6178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정빈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재웅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성현

변 론 종 결 2022. 12. 15.

판 결 선 고 2023. 1. 19.

주 문

1. C이 피고에게 한 2017. 6. 27.자 150,000,000원의 변제행위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 판결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D은 2016. 2. 29.부터 2017. 6. 14.까지 750,000,000원을, 2017. 6. 28.부터 2019. 6. 17.까지 184,000,000원 합계 934,000,000원을 C에게 편취당하였다.

나. D은 C을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시법원 2019차293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9. 7. 12. “733,78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9. 7. 31.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9. 11. 4.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D으로부터 양도받아 2019. 11. 26.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고, 승계집행문은 2019. 11. 26. C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고는 2017. 6. 27. C으로부터 150,000,000원을 변제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 이 법원의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피고는 원고가 소송신탁을 목적으로 채권을 양도받아 채권양도가 무효이고, 채권성립 이전의 변제행위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D의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가 오로지 소송을 목적으로 한 채권양도로 무효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D은 2017. 6. 27. 이전인 2016. 2. 29.부터 2017. 6. 14.까지 750,000,000원을 편취당하였으므로 원고가 양도받은 채권은 적어도 75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는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방해받아서 아니 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으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때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지 아니하고,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하며, 이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은 액수,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이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변제 전후의 수익자의 행위, 그 당시의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정 및 변제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C으로부터 15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대여금에 대한 변제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투자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채권의 성질에 관계없이 C이 2017. 6. 27. 피고에게 150,000,000원을 지급한 것은 변제에 해당한다.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C의 법률상 배우자의 친누나인 점, ② 피고는 2015. 6. 16.부터 2019. 5. 15.경까지 자 신이 이체한 돈보다 1,467,431,909원이나 초과하는 돈을 이체 받은 점, ③ 피고는 그 경위에 대해 2008년경부터 다수의 거래가 있었고, 현금거래도 많이 있었다는 등의 주장만 할 뿐 구체적으로 어떤 거래를 하여 어떤 경위로 변제받게 된 것인지에 관하여 합리적이고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피고는 처음에는 수사기관에 대여한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나중에 투자에 대한 변제라고 주장을 변경한 점, ⑤ 거래횟수나 거래금액, 거래의 간격이 통상적인 대여나 투자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짧은 기간에 상당히 큰 금액들의 이체가 반복되고 있는 점, ⑥ C의 사기 수법이 돌려막기 방식의 수법인 점, ⑦ 피고와 C 사이의 거래관계가 C이 피해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한 시점에

임박한 2019. 5. 무렵 종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2017. 6. 27.자 150,000,000원의 변제행위는 C와 피고가 통모한 것으로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

결국 C의 피고에 대한 2017. 6. 27.자 150,000,000원의 변제행위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C이 피고와 통모하여 한 변제행위로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

변제행위가 사해행위임이 인정되어 원상회복으로 금전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채권자는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 판결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 조병대